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 (안)

제출일자 : 1997. 11. 22.

제 출 자 : 고성군수

연	안	4 4 8
---	---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일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므로 지방재정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대.임차.도급.기타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경쟁에 붙일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 신청인에게 입찰 소요경비를 부담케 함으로써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세외수입 증대를 기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제1조(목적)에 "입찰참가 신청"을 삽입하고, 제5조(징수방법)에 "입찰참가 신청과 각종"을 삽입함(안제1조, 안제5조)
- 나. 제3조(요율) 제1항 요액의 "별표 1"에 "입찰참가 신청 1건당 10,000원"을 신설하여 개정함(안 별표 1)

3. 참고사항

- 가. 지방자치법 제128조(수수료), 제130조(사용료의 징수조례등)
- 나. 산청군 조례 상고심 송소관련 일간지(경상일보) 기사 사본

*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고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중 "검사등"을 "입찰참가신청 및 검사등"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중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를 "발급신청서, 입찰참가 신청서, 각종 신고서등에"로 한다.

<별표 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의 구분란중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등)란의 제8호 상수도관계 다음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9. 회계관계 (1) 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 제조, 구매 및 용역 등의 경쟁입찰)	1건당	1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에는 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사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u>검사등</u>(이하 "제증명" 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5조(징수방법) 수수료는 고성군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u>발급신청서</u> 또는 <u>신고서</u>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술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p> <p>(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5%;">요액</th> <th style="width: 1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생략) <신설> </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생략) <신설>					<p>제1조(목적)</p> <p>....., <u>입찰참가자신청 및 검사등</u>.....</p> <p>.....</p> <p>제5조(징수방법)</p> <p>..... <u>발급신청서, 입찰신청서, 각종 신고서</u></p> <p>.....</p> <p>.....</p> <p>(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5%;">구분</th> <th style="width: 15%;">기준</th> <th style="width: 15%;">요액</th> <th style="width: 15%;">비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현행과같음) 9. 회계관계 (1)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 경쟁입찰) </td> <td style="vertical-align: top;">1건당</td> <td style="vertical-align: top;">1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현행과같음) 9. 회계관계 (1)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 경쟁입찰)	1건당	10,000원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생략) <신설>																		
구분	기준	요액	비고															
<인.허가, 신고, 신청, 등록, 확인 등> 1.~ 8(현행과같음) 9. 회계관계 (1)입찰참가신청(공사, 물품의제조, 구매및용역등의 경쟁입찰)	1건당	10,000원																

第 9 章 收入 및 기금

第 126 條(地方稅) 地方自治團體는 法律에 依하여 地方稅를 徵收할 수 있다.

第 127 條(使用料) 地方自治團體는 公衆施設의 利用 또는 財産의 사용의 爲하에 使用料을 徵收할 수 있다.

第 128 條(手数料) ① 地方自治團體는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事務가 特定人을 依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爲하의 手續料을 徵收할 수 있다.

② 地方自治團體가 國家 또는 다른 地方自治團體의 委任事務가 特定人을 依한 것일 경우 그 事務에 爲하의 手續料을 徵收할 수 있다.

③ 第 2 條의 規定의 依한 手續料을 徵收할 地方自治團體의 長은 地方自治團體의 長官으로서 當該 地方自治團體의 事務를 掌理할 權限을 有한다.

第 129 條(分擔金) 地方自治團體는 公衆施設의 設置에 爲하의 費用의 一部가 該 施設의 利用을 爲하의 利益을 受할 者에 依하여 分擔金을 徵收할 수 有한다.

第 130 條(使用料의 徵收例等) ① 地方自治團體는 使用料을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使用料을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使用料을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第 131 條(地方稅의 徵收例等)

第 131 條(地方稅의 徵收例等)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①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②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③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④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⑤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第 132 條(地方稅의 徵收例等)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第 133 條(地方稅의 徵收例等)

第 133 條(地方稅의 徵收例等) 地方自治團體는 地方稅를 徵收할 權限을 有한다.

경상일보

1997년 10월

15일(수)

제2575호

THE KYUNGSANG ILBO

회장 홍남출 발행·편집·인쇄인

1997

'관급공사 입찰수수료 합당'

산청군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에게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합당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국 일선 자치단체가 저물린 조례개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산청군에 따르면 군이 96년 2월부터 6월까지 징수한 입찰참가수수료에 대해 지난 해 8월에 제기됐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14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수수료징수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제1관장 최

대법 산청군 조례인정 반환상고 기각

지자체 새 세원 개정 잇따를듯

중앙대법관)은 우남토건(주) 대표이사 마영수씨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입찰 참가자에게만 부과하는 수수료를 대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산청군 제중영 수수료 징수 조례」가 지방자치법 아래 불법하게 제정됐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의 이같은 판결은 일선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

라 중앙자치단체 등 국가계 약법에 따라 관급공사가 발주되는 각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기 위한 해당조례 개정 이 이뤄질 것으로 보며 여론이 일고 있다.

<산청=장영철기자>

분류기회보증성한정	발송	통계	
기안지	보통	판결	경관소
제원	제정	부등수	등수
결	전결	결	재